

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. 11. .

발 의 자 : 한옥문의장 외 인

1. 제안이유

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원활한 도시행정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제조항 완화(안 별표 7)
- 나.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제조항 완화(안 별표 8)
- 다.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제조항 완화(안 별표 9)
- 라.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제조항 완화(안 별표 10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8, 9, 10, 11
- 2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, 제16호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양산시 조례 제 호

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7, 8, 9,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7]

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31조제7호 관련)

※ 영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.
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
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.(다만, 50m 미만일지라도 건축물 용도·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,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)
-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. 다만, 50m 미만일지라도 건축물 용도·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,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)
-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라목부터 아목 까지에 해당하는 것
-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(국방·군사시설은 제외한다)
-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

[별표 8]

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31조제8호 관련)

※ 영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[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]
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.(다만, 50m 미만일지라도 건축물 용도·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,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)
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. 다만, 50m 미만일지라도 건축물 용도·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,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)
-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(국방·군사시설은 제외한다)

[별표 9]

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31조제9호 관련)

※ 영 별표 10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근린상업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[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]
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
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
-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.(다만, 50m 미만일지라도 건축물 용도·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,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)
-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. 다만, 50m 미만일지라도 건축물 용도·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,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)
-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아목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)
-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(군사시설은 제외한다)
-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

[별표 10]

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31조제10호 관련)

※ 영 별표 11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통상업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
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
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
-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
-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.(다만, 50m 미만일지라도 건축물 용도·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,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)
-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. 다만, 50m 미만일지라도 건축물 용도·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,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)
-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(군사시설은 제외한다)
-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[별표7]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31조제7호 관련)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. 다만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사업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)</p> <p>마. ~ (이하 생략)</p>	<p>[별표7]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31조제7호 관련)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. 다만, <u>50m 미만 일지라도 건축물 용도·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,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</u>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사업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)</p> <p>마. ~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[별표8]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31조제8호 관련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(생략)</p> <p>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. 다만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)</p> <p>라. (생략)</p>	<p>[별표8]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31조제8호 관련)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. 다만, <u>50m 미만 일지라도 건축물 용도·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,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</u>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)</p> <p>라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[별표9]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31조제9호 관련)</p> <p>가. ~ 라.(생략)</p> <p>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. 다만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)</p> <p>바. ~ (이하 생략)</p>	<p>[별표9]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31조제9호 관련)</p> <p>가. ~ 라.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. 다만, <u>50m 미만 일지라도 건축물 용도·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,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</u>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)</p> <p>바. ~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[별표10]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31조제10호 관련)</p> <p>가. ~ 마.(생략)</p> <p>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. 다만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)</p> <p>사. ~ (이하 생략)</p>	<p>[별표10]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31조제10호 관련)</p> <p>가. ~ 마.(현행과 같음)</p> <p>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. 다만, <u>50m 미만 일지라도 건축물 용도·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,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</u>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)</p> <p>사. ~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별표 8] <개정 2014.3.24> [시행일:2014.7.15] 도시·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

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71조제1항제7호 관련)

1.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(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)
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[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(도시·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)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]
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(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·저장소
-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
-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
- 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
- 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

2.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
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(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
-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
-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
-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·인쇄업·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(1)부터 (6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
-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
-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
- 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(국방·군사시설은 제외한다)
- 카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
- 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
[별표 9] <개정 2014.3.24> [시행일:2014.7.15] 도시·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

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71조제1항제8호 관련)

1.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(1)부터 (6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-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·저장소
-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
-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
-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
-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

2.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
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[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(도시·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)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]
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
-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(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(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
-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
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
-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제1호바목
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(국방·군사시설
은 제외한다)

[별표 10] <개정 2014.3.24> [시행일:2014.7.15] 도시·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

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71조제1항제9호 관련)

1.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
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(1)부터 (6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-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·저장소
-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
-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
-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
- 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

2.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[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(도시·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)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]
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)
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

-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
-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(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(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
-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(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
- 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카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
- 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
- 파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

[별표 11] <개정 2014.3.24> [시행일:2014.7.15] 도시·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

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)

1.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
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
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
-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
-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·저장소
-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
- 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
- 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

2.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
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)
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
-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
-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
-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
-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
-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(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(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

은 제외한다)

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
카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(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)

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

파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

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

거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

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
▣ 건축법 시행령

[별표 1] <개정 2014.11.28.>

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(제3조의5 관련)

15. 숙박시설

가.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

나. 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, 수상관광호텔, 한국전통호텔, 가족호텔, 호스텔, 소형호텔,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)

다. 다중생활시설(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)

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

16. 위락시설

가.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
나.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

다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(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
라. 삭제 <2010.2.18>

마. 무도장, 무도학원

바. 카지노영업소